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	행	개	정
제3조(업무) ①~⑤(생략)		제3조(업무) ①~⑤(현행과 같음)	
⑥ 기타 시민회관 설치목적에 따른 제업무		⑥ 시민을 위한 예식장 사업	
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		⑦ 기타 시민회관 설치목적에 따른 제업무	
		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	

부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236
의 결	93. 12. 24
년 월 일	(제25회)

제출년월일 : 1993. 12. .

제 출 자 : 조례정비특별위원회

☐ 제안사유

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 하고자 함.

☐ 주요골자

- 시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
- 행정력 낭비의 최소화

부천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시민회관사용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9조(보증금) ① 시민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30%를 보증금으로 사용료와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시민을 위한 예식장사업인 경우에는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(별표) 중 제3호 부대시설 사용금의 기타란 중 “라호”를 “별지1”과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1]

기	타	라. 영화촬영 및 비디오촬영	1건	10,000원
---	---	-----------------	----	---------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	행	개	정
제9조(보증금) ① <u>시민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사용료와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.</u>		제9조(보증금) ① <u>시민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30 %를 보증금으로 사용료와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.</u>	
②~③(생략)		다만, 시민을 위한 예식장 사업인 경우에는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.	
(별표1)중		②~③(현행과 같음)	
		(별지1)중	
기 타	라. 영 화 촬 영 및 비 디 오 촬 영	1건	<u>30,000원</u>
			<u>10,000원</u>

부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237
의 결	93. 12. 24
년 월 일	(제25회)

제출년월일 : 1993. 12. .

제 출 자 : 조례정비특별위원회

☐ 제안이유

- 부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제3조 중 기금 출납공무원과 분입기금 출납공무원의 직위를 현 직위로 개정코자 함.